

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·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6년 10월 11일
-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

4. 주요골자

-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물놀이장소에 도지사의 명을 받아 관할 소방서장이 설치·운영토록 정함 (안 제3조)
- 물놀이 장소의 안전시설·장비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함(안 제5조)
- 수상구조대의 임무에 관하여 정함 (안 제6조)
- 수상구조대원의 자격 기준에 관하여 정함 (안 제9조)
- 수상구조대원의 활동실비 지급에 관하여 정함 (안 제13조)
- 수상구조대원의 보호, 치료·보상에 관하여 정함 (안 제14조, 제15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·운영 조례안 검토한 바
-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.
- 다만, 수상구조대의 명칭이 제명 이하 “119시민수상구조대”로 정한 것은 지역적 효력의 범위 등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, 지역적 포괄성과 수상구조대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용어를 선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10조(모집·선발) 제2항중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한 선발 시험 실시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됨.
- 안 제11조(교육훈련)의 조문 내용 중 “수상구조대원 지원자”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선발된 자 이므로 “수상구조대원”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